

3. 금융분야의 중재와 발전 방향

박원일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학박사)

1) 개요

우리나라에서는 금융 분야에서 재판외 분쟁해결방법(ADR)의 하나인 중재가 별로 행하여지지 않았다. 그 이유는 금융에 관한 다툼은 법원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일반의 인식이 확고한 데다 큰 금액이 걸린 사건은 관련 금융기관들이 재판을 통해, 그것도 대법원판결까지 받아야 한다고 믿고 있기 때문이다. KIKO 사건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2008년과 2009년의 환율 격동기에 통화옵션 상품인 KIKO 거래를 한 많은 중소·중견기업들이 엄청난 손실을 입었다. 도산 위기에 처한 수출 기업도 적지 않았다. 기업들은 은행 측이 통화옵션 거래에 따른 위험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며 은행들과 다툼을 벌였는데, 국내 은행들은 예외 없이 대법원까지 가는 소송¹⁾을 통하여 해결하기를 원했다.²⁾

그러나 다툼은 금액이 크지 않은 경우 대부분의 금융소비자들은 은행, 증권, 보험을 막론하고 금융감독원에 설치되어 있는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의한 분쟁조정을 선호하고 있다. 이 역시 분쟁조정을 통한 해결비율이 그리 높지 않고 소송으로 가는 경우가 많다.

이 점은 국제적인 금융분쟁 사건에서 국제중재(international arbitration)가 많이 이용되는 것과는 사뭇 다른 양상이다. 이는 국제적인 사건의 경우 다툼은 금액이 거액인 데다 당사자인 금융기관이나 기관투자자들이 어느 특정국가의 법원에서 재판을 받기보다는 중재를 통한 분쟁해결에 익숙하고, 또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중재판정부가 비교적 신속·공정하게 중재를 통해 해결해 준다는 믿음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1) 대법원 2013.09.26 선고 2011다53683, 2012다1146, 2012다13637, 2013다26746 전원합의체 판결.

2) KIKO 사건은 노벨경제학상 수상자까지 법정증언을 하는 등 국내외적으로 비상한 관심을 모았다. 2013년 9월 26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KIKO 계약이 불공정행위 등으로 무효라는 기업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지 않고, 은행이 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만 은행의 일부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2) ADR로서의 금융중재 실태

1987년 금융 분야의 ADR 제도로서 도입된 금융분쟁조정은 금융 분야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고려하여 은행, 증권, 보험으로 나뉘어 실시되었다. 그러다가 1999년 1월 금융감독기구가 금융감독원으로 통합되어 출범하면서 그 안에 금융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되었다. 금융분쟁조정 사건은 주로 금융소비자의 신청에 의하여 전문가들로 구성된 금융분쟁조정위원회가 금융회사와 금융소비자 간에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정의견을 제시함으로써 당사자 간의 합의를 유도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금융회사들은 자기네에게 불리한 조정의견은 받아들이지 않고 소송을 통해 해결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일부 금융분쟁 사건³⁾의 경우 한국소비자원에서 소비자들의 구제신청을 받아 분쟁조정을 시도하기도 한다(소비자기본법 제60조). 2012년 3월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일반 채무자들이 근저당권설정비를 일방적으로 부담한 것이라며 잇달아 구제신청을 함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에 그치지 않고 소비자원에서 이들 신청자들의 집단소송을 지원하기도 했다.⁴⁾

그 결과 당사자가 많은 사건인 경우에는 금융분쟁조정과 소송의 두 갈래로 다뤄지고 결론이 상이한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예컨대 2008년의 ‘파워인컴펀드 사건’의 경우 일부 피해자들이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금융분쟁조정을 신청한 데 이어 또 다른 피해자들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다. 금융분쟁조정을 통해서 은행 측의 불완전판매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손실금액의 50%를 인정하는 조정안이 나왔으나, 은행 측이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아 조정이 성립되지 않았다. 법원에서도 1심 재판부에 따라 자산운용사의 책임을 일부 인정하기도 하고 은행의 책임만을 인정하는 등 판결의 내용이 서로 달랐다.⁵⁾

3) 사금융과 관련된 분쟁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에 의하여 관할 시·도지사에 등록된 대부업자 등과 거래 상대방 사이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기구로서 시·도지사 소속으로 분쟁조정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다(동법 제18조 1항). 이 조정위원회에서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법 제18조 2항). 그 밖에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우체국예금보험법”)에 의하여 우체국보험 이해관계인 사이에 발생하는 보험 모집 및 보험 계약과 관련된 분쟁은 우체국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해결하도록 하고 있다(동법 제48조의2).

4) 은행이 주택담보대출을 해줄 때 고객에게 징수하던 근저당설정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2011년 7월부터 은행이 모두 부담하고 인지세는 은행과 고객이 절반씩 내기로 했다. 그러나 대출을 받은 소비자들이 그 전에 냈던 설정비에 대해서도 은행의 부당이득이라며 환급을 요구하자 소비자원에서는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10년인 점 등을 고려해 2003년 1월 이후의 주택담보 가계대출에 한해 설정비 환급 신청을 받고 소송을 지원하였다. 동아일보 2012.3.8.자.

최근 주목을 끌었던 국제적인 금융중재 사건으로는 론스타가 외환은행 매각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부당한 개입과 양도소득세 부과로 손해를 입었다며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투자자-국가 분쟁(ISD)을 제소한 사건이 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도 들어 있는 ISD 조항과 관련하여 모처럼 대형 국제중재 사건이 벌어진 것이 국가적인 관심을 끌었다. 2013년 5월 영국의 중재전문변호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3인의 중재판정부가 구성되어 중재 심리에 들어갔다.⁶⁾

선박금융을 비롯한 대부분의 국제적인 금융중재 사건은 국제상업회의소(ICC) 산하의 국제중재재판소(International Court of Arbitration), 런던국제중재법원(LCIA), 싱가포르국제중재센터(SIAC), 홍콩국제중재센터(HKCIAC), 대한상사중재원(KCAB) 등 다양한 중재기관에서 다뤄지고 있다. 2013년 5월 27일 서울에 오픈한 서울국제중재센터는 이들 국제중재기관이나 당사자들이 진행하는 중재사건에 심리실, 준비실을 제공하는 중립적인 국제중재시설(공익사단법인)이다.

3) 일본의 사례 연구

헌법상 국민의 재판청구권이 보장(헌법 제27조 제1항)되어 있는 터에 재판의 분쟁해결방법을 법으로 강제할 수는 없지만, 사법부의 부담을 덜어주고 전문적인 분쟁해결을 도모한다는 견지에서 우리나라와 법제가 비슷한 일본의 통일적인 금융ADR 시행에 대하여 알아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일본에서도 금융중재가 별로 활성화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일본에서는 ADR의 활성화를 사법제도개혁의 일환으로 추진하였다. 2001년에 사법제도개혁 심의회의 의견에 따라 제정된 「사법제도개혁추진법」은 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개혁추진본부를 설치하고, 동 본부에서는 민사사법제도 개혁의 7개 사항 중의 하나로 ADR의 확충·활성화를 제시하였다. 그 결과 「재판의 분쟁해결절차의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ADR촉진법”)이 2004년 제정되어 2007년 4월부터 시행되었다.⁷⁾

이 법은 법무대신의 인증을 받아 조정·알선 등 화해의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민간사업자⁸⁾ 제도를 창설하고, 인증 분쟁해결절차에는 시효중단, 소송절차 중지 등의 효력을 인정하였다. 2008년에는 「독립행정법인 국민생활센터법」이 개정되어 국민생활센터 분쟁해결위원회에서 피해

5) 김용길, “과위인컴펀드의 불완전판매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유무”, 월간 금융 2008. 12월호, 전국은행연합회, 2008.12, 81면.

6) 외교부 2013.5.14.자 보도자료, “론스타 관련 중재재판장에 조니 비더 영국 LCIA 부원장 선정”.

7) 김선정, “일본의 금융분야 ADR에 관한 검토”, 중재연구 제20권 3호, 2010.12.1., 123면.

8) 금융 분야에서 인증을 받은 단체로는 일본증권업협회와 일본공제협회의 공제상담소가 있다.

액이 적은 사건에 대한 화해의 중개 또는 중재로 분쟁의 해결을 도모하도록 하였다.

또한 2007년에 「금융상품거래법」이 시행되면서 금융상품 거래에 따른 금융사업자와 금융 소비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분쟁이 생기면 이를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09년 6월에는 금융상품거래법 등 16개 금융관련 법률의 개정을 통해 금융 ADR 제도를 창설하고, 지정 분쟁해결기관을 통하여 통일적으로 금융분쟁을 해결하도록 규정하였다.⁹⁾ 이에 따라 분쟁해결위원회는 분쟁의 해결에 필요한 화해안을 작성하여 당사자에 대하여 그 수락을 권고할 수 있으며, 화해가 성립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 경우에는 특별조정안을 이유를 붙여 당사자에게 제시할 수 있다. 만일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관계 금융사업자가 당해 소송이 제기된 취지 및 청구이유를 지정 분쟁해결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¹⁰⁾

4) 금융중재의 발전방향

우리나라에서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 방식으로도 금융분쟁을 충분히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중재법상 계약상의 분쟁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일정한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이미 발생하였거나 장래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기로 하는 당사자 간의 합의(동법 제3조 제2호)만 있으면 중재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금융분쟁에서 중재가 널리 이용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중재의 이점이 잘 알려져 있지 않고, 중재는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 분쟁해결방법이라는 인식이 뿌리 깊게 박혀 있기 때문이다. 중재는 KIKO 재판에서 보았듯이 과생금융상품을 잘 모르는 법관이 아닌 관계전문가로 구성된 1~3인의 중재판정부에 의하여 단 한 번의 중재로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이다. 조정은 제시된 해결방안에 대하여 당사자의 거부권이 인정되는데 반하여 중재는 일단 당사자를 구속하고, 중재판정은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중재법 제35조). 중재판정에 대한 통상적인 불복절차는 없으며, 법원에서의 항소도 허용되지 않는다.

중재제도를 잘 활용하면 금융기관보다 상대적으로 약한 지위에 있는 금융소비자들을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¹¹⁾ 현재 우리나라의 금융분쟁해결기구는 너무 다기화되어 있어 금융소

9) 김선정, 앞의 논문, 125, 128면.

10) 위의 논문, 133~134면.

11) 고동원, “금융분쟁조정 제도의 개선을 위한 입법 과제”, 입법과 정책 제5권 1호, 국회입법조사처 2013.6, 2면.

비자들도 헛갈리고 상이한 결과가 나올 경우에는 이용자들의 공적 분쟁해결방법에 대한 불신과 도덕적 해이를 초래하고, 분쟁해결 조직과 인력의 중복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¹²⁾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금융분쟁해결기구의 독립성·전문성 강화 및 이를 위한 통합 금융분쟁조정기구의 설립, 집단 금융분쟁조정 제도의 신설 등의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¹³⁾ 금융분쟁의 해결에 중재 방식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금액 이하의 소액 금융분쟁사건의 경우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 간에 사전 중재합의 조항을 의무화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¹⁴⁾

금융소비자가 중재를 선택하는 경우에는 금융기관이 반드시 이에 응하도록 하는 편면적(일방적) 중재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금융분쟁조정기구에 중재의 기능까지도 부여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¹⁵⁾ 이와 같이 금융분쟁 사건에 중재제도를 널리 도입함에 있어서는 현재의 금융분쟁해결기구들에 금융중재의 실적과 경험이 어느 정도 축적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

12) 고동원, 앞의 논문, 11면.

13) 위의 논문과 서정일, “ADR분쟁조정제도의 통합적 운영방안”, 계간 중재, 2010년 봄호, 대한상사중재원, 2010.3.; 노태석, “현행 금융 분쟁 해결제도에 관한 법적 연구”, 일감법학 제19호,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11.2. 참조.

14) 노태석, 위의 논문, 99면.

15) 고동원, 앞의 논문, 19면. 이 경우 독립된 통합 금융분쟁조정기구로서 (가칭) ‘금융분쟁조정중재원’의 설립을 고려할 수 있다고 한다.